| 규정 코드 | A05(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) | 최종 제.개정일 |
|---|---|---|
| 규정 명칭 | 각 위원회 및 국가대표급 선발에 관한 규정 | 2011. 9 제정<br>2013. 4. 01 개정<br>2014. 3. 29 개정<br>2015. 3. 21 개정<br>2016. 1. 23 개정 |

# A05 각 위원회 및 국가대표급 선발에 관한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설치근거)**
본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사단법인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(이하 '연맹'이라 한다.) 정관 제7장 제39조에 의거 설치한다.

**제2조 (목적)**
연맹 정관에 명시된 국제경기대회 참가 및 국가대표 선수훈련을 위해 구성되는 임원 및 선수를 공정하고, 효율적으로 선발하는 것, 경기력 향상을 꾀하고 각 부문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적용범위)**
연맹에 등록한 모든 선수, 임원 및 시·도연맹, 업무 종사자에 적용한다.

## 제 2 장 조직 및 운영

**제4조 (위원회의 구분)**
위원회는 '종목경기위원회'와 '업무부문위원회'로 구분한다(총괄적으로 위원회라 한다.)

1. 종목경기위원회 - Foot-O, MTB-O, Ski-O Trail-O
2. 업무부문위원회 - 그 외 위원회

**제5조 (위원회의 구성)**

1. 각 위원회는 본 연맹 정관의 이사 및 위원회의 조직에 따라 동일하게 구성되며 시·도연맹의 이사가 위원이다.
   단 도핑위원회에는 4개 종목경기위원회 위원장은 옵서버 자격을 인정한다.
2. 필요 시 오리엔티어링 및 스포츠 관련 인지도가 있는 경험자 중에서 종목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3. 각 위원회의 정수는 각 시·도 연맹의 수±5인 정도로 한다.
4. 각 위원회간의 업무(정리, 보고)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위원장으로

‘전체위원회’ 를 구성한다. 단 최연장자를 사회자(전체 위원회 의장/이하 의장)로 한다.

**제6조(위원회 임원 선출과 위원의 변경)**

1. 위원회 임원 선출 방법
   ① 각 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받는 각 종목·부문별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장, 부위원장, 총무를 선출한다.
   ② 위원장의 선출에 있어 ‘전체위원회’에서 조정하여 정하거나 협의하여 한 연맹에 편중되는 선출을 막도록 할 수 있다.
   ③ 부득이한 경우 전자서명을 이용 통신수단으로 의견을 통합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. 이때 각 위원은 미리 전자서명(별지 제66호 서식)을 본 연맹 사무국에 접수하여야 한다.
   ④ 위원회 임원이 각 시·도 연맹의 관련 종목 및 부문 이사의 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현 위원장(또는 부위원장, 총무 순으로 관장) 주제로 ①, ②항의 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한다.
   ⑤ 위원장으로 선출되면 정관(제27조, 제28조/본 연맹 이사)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(이사의 업무 수행, 임원회비).
2. 위원회 임원이나 위원이 보직, 이동 등 변동이 있을 때
   ① 위원이 변경된 경우 본 연맹 사무국과 이동된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한다.
   ② 위원장, 부위원장, 총무 임기는 4년을 기본으로 한다. 이동이 있는 경우 임원 중에서 선임자 순으로 주도하여 보선하고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. 그 임원의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.
   ③ 만약 위원회 임원이 타 위원회로 이적되었다면 평 위원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)**

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는 아래와 같다.

1. 각 위원회 운영
   ① 위원장 등 위원회 임원 선출 및 보선
      ㉮ 구성원의 1/5명이 한 연맹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.
      ㉯ 보선 경우 부득이 ㉮ 항의 원칙이 성립되도록 해당 시·도연맹을 배제할 수도 있다.
      ㉰ 보선의 처리는 2주 이내로 한다.
   ② 중요 사업 등 필요로 하는 사항 관련
   ③ 별도의 사업이나 지급 처리하여야 사항
   ④ 연간 사업의 결산과 사업계획(매년12월 이전)
   ⑤ 종목위원회의 임원 추천, 대표선수 선발 선정 및 징계 등의 업무
2. 전체위원회 운영
   ① 위원장 선임의 편중 여부 심의, 조정, 권장.
   (한 연맹에 편중된 선출의 조정, 권장 등 조정할 사항의 심의)

② 대표팀의 임원 및 선수 선발, 징계에 관한 사항
③ 연간 사업의 결산과 사업계획(매년12월 이전)

3. 전체운영회의(위원장 급 회의)는 위원회 의장이 회의를 주관 한다.
4. 소집은 위원장 혹은 각 위원회 과반수의 발의로 소집한다.
5. 각 위원회에서 안건을 회의 구성원 과반수 참석과 찬성으로 결의하고 전체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이사회 또는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. 단. 동수인 경우는 위원장 또는 의장의 의견으로 결정 한다.
6.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,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 또는 유선결의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차기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
7. 위원장 및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자가 되거나 직접 이해 관련이 있는 경우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.
8. 업무의 관련성(협조체제)이 있는 안은 관련 위원회 회의를 통합 운영 할 수 있다.
9. 규정(제정, 개정)과 관련한 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기능)**

1. 풋(Foot) O경기위원회
   Foot O 대표선수 선발전 및 대표 선발, 훈련, 출전관리(임원) 업무, 도핑에 관한 업무, 경기력 향상, 기타 전반, 위원회 임원 선출
2. 자전거(MTB) O경기위원회
   MTB O 대표선수 선발전 및 대표 선발, 훈련, 출전관리(임원) 업무, 대회 운영 및 전문교육, 도핑에 관한 업무, 경기력 향상, 기타 MTBO전반, 위원회 임원 선출
3. 스키(Ski) O 경기위원회
   Ski O 대표선수 선발전 및 대표 선발, 훈련, 출전관리(임원) 업무, 대회운영 및 전문교육, 도핑에 관한 업무, 경기력 향상, 기타 Ski O 전반, 위원회 임원 선출
4. 트레일(Trail) O 경기위원회
   Trail O 대표선수 선발전 및 대표 선발, 훈련, 출전관리(임원) 업무, 장애인관련 일반. 선수관련 업무, 대회운영 및 전문교육, 도핑에 관한 업무, 경기력 향상, 기타 Trail O전반, 위원회 임원 선출
5. 교육기술 위원회
   오리엔티어링 기본 교육을 담당한다. 강사 및 지도자교육, 보수교육, 인재 양성 교육, 승급 등에 관한 교육 관리, 교육 표준화 작업, 교육 개발 및 마케팅 업무, 위원회 임원 선출
6. 지도제작위원회
   IOF 규정의 연구 및 교육, 지도제작의 기초, 제작 보급을 위한 수행, 제작 통일을 위한 사업, Map school 운영 권리, 기획과 운영, 기타 관련 업무, 위원회 임원 선출
7. 출판홍보위원회
   O-성장과 발전을 위한 온라인. 오프라인 및 미디어의 활용과 통제, 출판물 관련 업무, 협찬자 업무, 위원회 임원 선출

8. 해외위원회
IOF, 회원국 등 내외적 업무 및 정보 제공 및 번역에 대한 업무, 해외 교류 업무, 위원회 임원 선출
9. 경기심판위원회
심판관의 배출교육(보수) 관리, 대회의 심판 배정, 심판관의 수칙, 심판 관련 업무, 위원회 임원 선출
10. IT 및 장비 위원회
관련 IT 자료 입수, 개발, 제공 업무, 위원회 임원 선출
11. 청소년 위원회
학교체육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생 및 청소년 오리엔티어링 정책 운영, 위원회 임원 선출
12. 환경위원회
교육장, 대회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련한 업무, 위원회 임원 선출
13. 도핑위원회
도핑관련 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, 위원회 임원 선출
14. 특별위원회
본 연맹의 사업상 필요로 하여 총회의 인준을 거쳐 둘 수 있다.

## 제 3 장 대표선발 요건 및 유형

**제9조 (대표선발 대상자의 자격)**

1.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시,도 연맹에 소속된 회원이어야 한다.
2.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에 주소지 기준 연맹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하여야 한다.
3.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명시된 국가대표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.

**제10조 (선발 대상 대회)**

1. 각 종목별(Foot O, MTB O, Ski O, Trail O)로 구분하여 선발한다.
2. Foot O 종목은 세계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(WOC), 아시아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(AsOC)를 대상으로 한다.
3. Trail O 종목은 세계트레일오리엔티어링선수권대회(WTOC)를 대상으로 한다.
4. 일회성으로 추가 파견이 필요한 대회 또는 파견대상 대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발대상 대회를 결정한다.

**제11조(선발 계획의 공지)**

1.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매년 3월까지 당해 년도 선발규모 및 대상대회 등 선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이사 명의로 각 시, 도 연맹에 공지한다.
2. 선발전 대상 대회는 그 해에 계획된 공인대회를 기준으로 먼저 공지하고 추후 조정하

도록 한다.

## 제 4 장 대표 선발

### 제12조 (선발 기준)

1. 각 종목별로 3회차 이상 선발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종목 사정에 따라 선발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2. 선발 기준은 대회 성적을 점수화 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순으로 선발한다. 종목별 선발방법 및 점수 계산방법은 제14조에 따른다.

### 제13조 (선발 인원)

1. 선발 인원은 본 연맹의 사정에 따라 정한다.
2. 국제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인원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.

### 제14조 (종목별 선발 방법)

1. Foot O 선발

① 선발전 대상 대회에서 각 경기자가 획득한 포인트 중에 가장 높은 점수 순으로 최대 3개 대회까지의 포인트를 합산하여 그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 한다.

② 등위별 포인트의 계산방법은 1위 선수가 기록한 시간을 기준으로 각 등위 별 시간을 나누어 기본 1000 포인트와 대회 할증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.

③ 기준이 되는 1위의 기록은 외국인 참가자나 선발 대상자가 아닌 선수를 제외하고 선발 대상자 중 1위를 기준으로 한다.

**등위별 포인트 = 1위 선수의 기록(초) / 경기자의 기록(초) * 1000 * 대회계수**

④ 대회계수는 아래의 기준으로 적용한다. 만약 두 개의 조건이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할증계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Foot O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- 한국선수권대회 : 1.1
- 전국체전 동호인대회 : 1.05
- 시,도연맹 주최 공인대회 : 1.0
- 지도축척 1:10,000 이하 : 1.05
- 지도축척 1:7,500 이상 : 1.0

⑤ 대회를 운영하는 연맹에 소속된 선수는 선발전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기 참여와 관계없이 선발전 대상 성적에서 제외한다.

⑥ 한국선수권대회 및 전국체전 동호인종목대회는 위 ⑤항의 적용에서 제외한다.

⑦ 선발전 포인트가 동점일 경우의 처리

- 동점자가 생길 경우에는 대회 참가 횟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.

대회 참가 횟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.

2. MTB O 선발

① 점수 환산은 Foot O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3. Ski O 선발

① 점수 환산은 Foot O 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4. Trail O 선발

① 3개 선발 대회를 열어 최대 합산 1위자로 한다.
단 횟수는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각각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정에 따라 인원은 조정한다.

③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**제15조 (선발결과의 공지)**

1. 최종 선발 결과는 종목위원회 심의를 거쳐 담당이사 명의로 각 시, 도 연맹에 공지한다.

2. 종목위원회에서는 선발선수의 대표자격 결격 사유가 있는지, 파견대상 대회에 참가 의사가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필요 시 최종 선발 선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3. 최종 선발된 대표선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4. 최종 선발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말까지 공지하여야 한다

**제16조 (국가대표팀 임원 선발)**

1. 본 규정에 의한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 대상은 감독 및 코치에 한한다.

2.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, 종목경기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.

3. 국가대표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.

① 본 연맹 또는 시.도 연맹 임원으로 2급 지도자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

② 지도자로서의 코칭 능력과 관리 능력, 어학 능력을 갖추어 대표팀 인솔 및 비상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자를 우대한다.

4. 선발 절차는 아래와 같다.

① 해당 종목경기위원회에서 상기 2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.

②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선발한다.

## 제 5 장 국가대표 선수

**제17조 (대표팀의 조직)**

1. 대표 선수단 임원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단장 1명, 감독 1명, 코치 1명으로 하며 선수단 규모에 따라 코치의 인원을 조정한다.

2. 2개 종목이상의 통합 선수단이 조직될 경우에는 종목별로 감독 및 코치를 선임한다.

**제18조(대표선수의 의무)**

1. 대표선수 자격 유지 기간은 선발확정 공지 시점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2. 대표선수는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다른 국적의 대표 및 구성원이 될 수 없다.

3. 국가대표선수는 소정의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4. 국가대표선수는 국내외 활동에 있어 아래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   ① 본 연맹의 정관 및 본 규정에 명시한 사항

   ②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규정

   ③ 대한체육회올림픽위원회의 마케팅규정

   ④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

5. 국가대표선수는 국내외 활동에 있어 아래의 의무사항을 갖는다.

   ① 품행을 단정히 하고, 규정과 에티켓을 지켜 타의 모범이 되며, 국가 대표 선수로서 자긍심과 품위를 지킨다.

   ② 연맹으로부터 지원받은 물품은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반드시 착용할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.

   ③ 대한체육회, 본 연맹의 방침 및 국가대표 임원진(감독, 코치)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따른다

**제19조 (지원 범위)**

1.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 및 임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한다.

   ① 국제대회에 공식 파견될 경우 대회 참가비 및 인증료를 지원한다. 단 선수별 참가 가능한 경기 수는 종목 담당이사 또는 선수단 임원에 의해 결정되고 선수 본인 의사에 의해 추가로 경기에 참가할 경우에는 추가 참가비를 선수 본인이 부담한다.

   ② 국제대회 파견되는 선수단에게는 대표선수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하고 선수의 경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단체복을 지급한다. 단 단체복을 지급 받은 선수 및 임원이 4년 이내 재 선발될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.

2. 선수가 임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선수 기준으로 지원한다.

3. 일회성으로 선수단을 구성하여 파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.

**제20조 (결과 보고)**

1. 감독은 대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연맹에 보고하여야 한다.

2. 대회종료 후 2주 이내에 별지서식(제00호)을 이용하여 약식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세부보고서를 제출한다.

3. 대회 세부보고서에는 참가 선수들의 경기결과, 경비지출내역, 문제점 및 대책방안, 대회참가 소감, 대회수집자료 등을 정리하여 보고한다.

4. 필요할 경우 별도의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선수단은 참석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21조 (징계 사유)**

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.

1.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한 소집 명령에 무단으로 응하지 않은 자.

2. 대표선수로 선발된 후 타 국적, 단체로 무단 참가한 자.

3. 고의적으로 국가 및 소속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

4. 제19조에 명시한 의무 사항을 위반한 자.

5. 기타 징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

**제22조 (징계 절차)**

1. 징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

   ① 주의 - 경미한 도덕적인 위반 행위

   ② 경고 - 해당 위반 행위가 뚜렷한 경우

   ③ 자격박탈 - 중대한 과실, 경고 3회에 이른 자. 선수(팀)에서 제외 조치한다

2. 해당 팀 임원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각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'징계위원회'를 열어 처리 한다.

3. 필요하다면 대상자의 소명이나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.

4. 최종 결과는 일자 및 사유, 징계사항을 명시하여 본인에게 서면(징계통보서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5. 임원 징계의 경우 그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상급기관에 하여야 한다.

6. 국가대표 활동 중 불합리한 사유로 사퇴할 경우 연맹에서 지급한 훈련 활동비, 기타 제 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**제23조 (경과조치)**

본 규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 '종목, 부문별 위원회' 결정에 따른다.

**제24조 (시행일)**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한다. <2011년 9월>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. <2013년 4월 1일>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. <2014년 3월 29일>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. <2015년 3월 21일>

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로 개정한다. <2016년 1월 23일>